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053호 2014.10.30.(목)

차 례

규 칙

-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36호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에관한과태료부과·징수
규칙 폐지규칙 ----- 7

예 규

-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87호 인천광역시서구위반건축물에대한과태료부과등부과
지침 폐지 예규 ----- 8

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센터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임하며 팀장,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한다.

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임용된 팀장,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1년에 2회(상, 하반기)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.

제18조제4항 단서 중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별표1과”를 “별표2와”로 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승진임용) 상위 직급에 결원 발생 시 별표2에서 정한 직원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직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구청장의 승인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,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. 단,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 실적이 저조할 경우 공개채용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, “7급 상당”을 “6급 상당 또는 7급”으로, “9급”을 “8급 상당 또는 9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표2와”를 “별표3과”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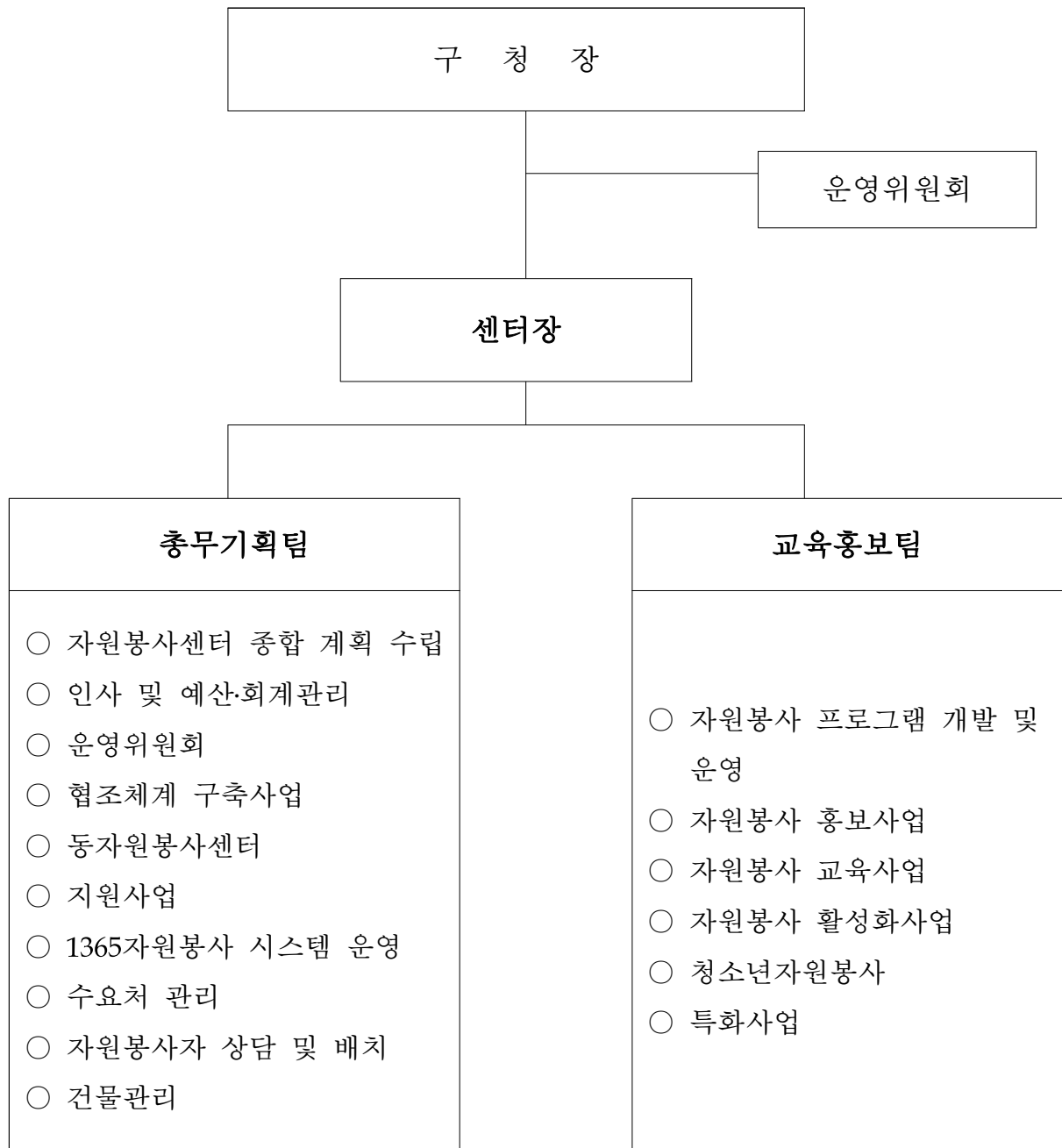
제21조제1항제1호 중 “자원봉사센터소장”을 “자원봉사센터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표3과”를 “별표4와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



※ 업무(사무)의 분장은 센터의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

[별표2] 직원 임용 선발 자격

구분	선발시험		자 격 기 준
	1차	2차	
센터장	서류 전형	면 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○ 자원봉사 단체·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 기관, 시설, 학교,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○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 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
팀장	"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·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○ 7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○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○ 6급 상당 팀장은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7급 상당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자 ○ 7급 상당 팀장은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8급 상당으로 7년6개월 이상 근무한 자
운영 요원	"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자로 자원봉사 기관·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○ 9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○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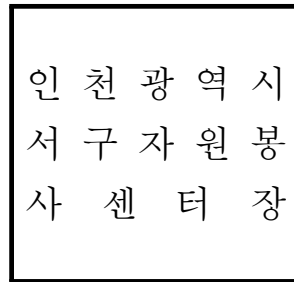
[별표3] 센터 직원의 호봉 산입표

구 분	경 력 산 입 내 용
갑 경력(10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- 군 복무 경력(의무복무기간에 한함) - 시 및 군·구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근무경력
을 경력(8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자원봉사 관련 단체근무 경력 -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아동복지법」,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여성발전기본법」 등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(단,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
병 경력(5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

※ 군복무 경력 및 각종 경력인정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아니하며, 기타 제반사항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준한다.

[별표4]

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장 직인



○규격 : 가로 2.1cm × 세로 2.1cm

인천광역시서구위반건축물에대한과태료부과등부과지침 폐지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강 범 석

2014년 10월 30일

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87호

인천광역시서구위반건축물에대한과태료부과등부과지침 폐지예규

인천광역시서구위반건축물에대한과태료부과등부과지침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